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132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기한 후 신고자의 수정신고·경정청구가 허용되어 그 내용을 규칙에 반영하고, 지방소비세가 구세로 신설됨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처리부 서식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한 후 신고자의 수정신고·경정청구가 허용되어 이에 대한 조문 정비(안 제3조)
- 나. 지방소비세 납입처리부 서식 신설 (안 제8조의2)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세무1과, 전화 : 02-3396-5102, FAX : 02-3396-8695, E-mail : cgroh@junggu.seoul.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세무1과(☎3396-510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제2장의2(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지방소비세

제8조의2(납입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 및 명세를 통보받으면 별지 제15호 서식의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적용기간) 제8조의2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별지서식

서식번호	서 식 명	비고
1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	변동없음
2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처리부	"
3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	"
4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내역서	"
5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	"
6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	"
7	건축물 조사표	"
8	주택 조사표	"
9	선박 조사표	"
10	항공기 조사표	"
11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	"
12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	"
13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	"
14	납세관리인 관리대장	"
15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	신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

월별	국세청 납입액	국세청 납입일	안분기준	안분액	납입액	납입일	결 제		
							담당자	팀 장	과 장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수정신고 등) <u>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신설></p>	<p>제3조(수정신고 등) <u>납세의무자</u>-----</p> <p>-----</p> <p>-----</p> <p>-----</p> <p>-----</p> <p>-----</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의2 지방소비세</p> <p><u>제8조의2(납입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 및 명세를 통보받으면 별지 제15호 서식의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u></p>